

#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0
----------	-----

제출년월일 : 2010. 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1. 개정사유

- 가. 법령상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 위원회의 별도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정비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함 (안 제3조제2항·제4항)
- 나. 위원회 기능에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내용을 신설함(안 제4조)
- 다. 학교폭력예방 대책관련 회의는 반기별 1회 신설(안 제7조제1항)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 3. 참고사항

-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15-9쪽)
-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15-10~13쪽)

##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41조와 「청소년보호법」 제47조,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와 지원 및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인천광역시의회의원, 교육자, 학부모, 관련단체장, 청소년지도자,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위원, 판사·변호사 및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 가. 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나.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
-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와 지원
- 라.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 마. 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사.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 아.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
- 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1조 중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기본법 41조의 규정에 의거”를 “기본법 제41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동법시행령 제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중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기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보호법」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타사유”를 “그 밖의 사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1조와 「청소년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47조, 「청소년복지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41조와 「청소년보호법」 제47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와 지원 및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설치와 구성)①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p>	<p>제3조(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기본법」(이하“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p>
<p>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청소년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청소년과 인천광역시의회의원, 교육자, 학부모, 관련단체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인천광역시의회의원, 교육자, 학부모, 관련단체장, 청소년지도자,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위원, 판사·변호사 및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lt;신설&gt;</p> <p>1. <u>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u></p> <p>2. <u>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u></p> <p>3. <u>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와 지원</u></p> <p>4. <u>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u></p> <p>5. <u>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p> <p>6. <u>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7. <u>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u></p> <p style="text-align: right;">2. &lt;신설&gt;</p>	<p>제4조 (기능) -----</p> <p>--</p> <p>1. <u>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u></p> <p>가. <u>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u></p> <p>나. <u>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u></p> <p>다. <u>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와 지원</u></p> <p>라. <u>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u></p> <p>마. <u>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p> <p>바. <u>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u></p> <p>사. <u>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u></p> <p>아. <u>그밖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2. <u>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u></p> <p>가. <u>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u></p> <p>나. <u>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u></p>
<p>제7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생략)</p>	<p>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u>시</u>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 -- <u>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u> -- ----- ----- ----- -----
제12조 (설치와 구성) <u>기본법 41조의</u> 규정에 의거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시 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와 구성) <u>기본법 41조에</u> 따라 ----- ----- ----- ----- -----
제14조 (사업) ① (생략) 1~6 (생략) 7. <u>기타</u>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 (생략)	제14조 (사업)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u>그 밖에</u>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협의회 가입회원과 협력) ① 협의회의 가입회원은 기본법 제3 조 제8호와 <u>동법시행령 제2조</u> 에서 정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정관상 청소년 육성과 선도 보호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u>기본법 제40조의</u>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와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제16조 (협의회 가입회원과 협력) ① ----- -- <u>같은 법 시행령 제2조</u> ----- ----- ----- ----- ② ----- <u>기본법 제40조에</u> 따라----- ----- -----
제19조 (학자금 지원) 시장은 <u>기본법 제8조의</u> 규정에 의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학생의 학자금전액을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학자금 지원) --- <u>기본법 제8조에</u> 따라 ----- ----- ----- ----- -----



현행	개정안
<p>제22조(시민명예감시원 운영)① 시장은 <u>보호법 제47조의 규정</u>에 의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소년보호단체·법인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임직원과 회원으로서 1년 이상 청소년보호 활동을 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100인 이내로 인천광역시시민명예감시원(이하 “시민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2조(시민명예감시원 운영)① -----  「청소년보호법」 제47조에 따라-----  -----  -----  -----  -----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 (기능) 시민명예감시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p> <p>1. (생략)</p> <p>2. <u>보호법</u> 위반여부 순찰과 위반자 신고·고발</p> <p>3. (생략)</p> <p>4. 기타 시장의 요청에 의한 청소년보호활동과 합동단속 참여</p>	<p>제23조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u>청소년보호법</u>」 -----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p>
<p>제2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u>지원법 제4조의 규정</u>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 ④ (생략)</p>	<p>제2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u>청소년복지지원법</u>」 제4조에 따라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7조 (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u>인천광역시</u> 청소년 정책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p> <p>2. (생략)</p> <p>3. <u>기타</u>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등</p>	<p>제27조 (기능) -----  -----  1. <u>시</u> -----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p>
<p>제29조 (임기) ①~② (생략)</p> <p>③ 위원의 임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u>기타사유</u>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참여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p>	<p>제29조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그 밖의 사유</u>-----  -----  -----</p>

##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 ○ ○ ○ ○ ○
<b>실·국별 의견수렴결과</b>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09.11.17~ '09.12.4  ○ 내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b>입 법 예 고 결 과</b>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출의견	조치내용
○ 기간 : '09.11.17~ '09.12.4  ○ 방법 : 시보게재		“의견 없음”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덧붙임”</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단체장이 된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지역위원회에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 ⑦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